# 회계학 2부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 1】** 거주자 김국세 씨(남성, 65세)의 2018년도 소득에 대한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들은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30점)

1. 금융소득 관련자료

(1) 2011.9.1.에 (주)A의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2018.6.30.에 탈퇴할 때까지 총 ₩30,000,000의 공제료를 납입하였으며, 탈퇴시 ₩40,000,000의 반환금을 수령하였다.

(2) 2018.2.1.에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을 차입하여 동 금액을 고교동창인 甲에게 빌려주었다가, 2018.11.30.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107,000,000을 甲으로부터 회수하였다. 그리고 2018.11.30.에 상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104,000,000을 은행에 상환하였다.

(3) 미국소재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액은 ₩14,000,000이며, 이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1,000,000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없다.

(4)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B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따라 김국세 씨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B의 사업연도 | 결산확정일 | 소득처분액 |
|---|---|---|
| 2017.1.1.~2017.12.31. | 2018.3.2. | ₩18,000,000 |
| 2018.1.1.~2018.12.31. | 2019.3.2. | ₩15,000,000 |

2.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관련자료

(1) 김국세 씨는 2008.7.1.에 (주)A에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6.30.에 퇴직하면서 ₩816,000,000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김국세 씨가 2015.7.1.부터 2018.6.30.까지 (주)A로부터 받은 총급여(비과세소득과 인정상여는 제외)는 ₩630,000,000이다.

(3) 김국세 씨가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주)A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370,000,000이다.

(4) 김국세 씨가 퇴직급여 이외에 (주)A로부터 2018년에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액 : ₩48,000,000 (근무기간 중 수령액임)

② 상여금 : ₩20,000,000 (근무기간 중 수령액이며, 2017.11.30.에 잉여금처분 결의에 따라 지급된 ₩2,000,000을 포함함)

③ 근무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로 받은 금액 : ₩20,000,000

④「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 ₩12,000,000 (이중에서 ₩5,000,000은 퇴사한 이후에 지급받은 것임)

3. 연금소득 관련자료

(1) 김국세 씨가 2018년에 수령한 국민연금은 ₩12,000,000이다. 총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750,000,000이고, 2002.1.1.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450,000,000이다. 그리고 2002.1.1.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3,200,000으로 확인된다.

(2) 김국세 씨는 2006.1.1.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이후 가입기간 동안 총 ₩50,000,000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였으며, 이중에서 ₩10,000,000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당해 연금저축계좌는 2018년 초부터 연금수령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김국세 씨는 2018.1.1.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 평가액은 ₩65,000,000이다. 그리고 김국세 씨는 2018.1.10.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료목적으로 당해 연금저축계좌에서 ₩8,000,000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 2018년 말까지 당해 연금저축계좌에서 ₩22,000,000(법령에서 정하는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출하였다.

4. 근로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5. 연금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

6.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 - 20년) |

7. 환산급여에 따른 퇴직소득 차등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8.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과세표준-1,200만원) ×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과세표준-4,6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과세표준-8,800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과세표준-1억5천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과세표준-3억원) × 40% |
| 5억원 초과 | 1억 7,460만원 + (과세표준-5억원) × 42% |

물음 1)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115,000,000이고 종합소득공제가 ₩10,00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해답 |
|---|---|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

물음 2)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과, ② 퇴직소득 한도초과액(가급적 금액을 작게 하는 것으로 가정함) 및 ③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수령한도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9점)

| 구분 | 해답 |
|---|---|
|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 |
| ②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 |
| ③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수령한도액 | |

물음 3) 위 물음 2)에서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의 해답이 ₩40,00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① 근로소득금액과, ② 2016.1.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해답 |
|---|---|
| ① 근로소득금액 | |
| ② 퇴직소득과세표준 | |

물음 4) 위 물음 2)에서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수령한도액'의 해답이 ₩16,00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①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과, ②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9점)

| 구분 | 해답 |
|---|---|
| ①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 | |
| ②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 | |

**【문제 2】** 다음은 (주)한국의 제20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은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상장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한국은 2018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000,000,000이고, 차입경영을 하지 않는 무부채기업이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도 없다고 가정한다. (주)한국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는 모두 내국상장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음의 각 자료는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같은 자료에 2개 이상의 세무조정이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20점)

<자료 1>

1. (주)한국은 (주)대한(발행주식 총수 2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한국은 유상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2014년에 회계처리 하였으며, 2014년 주식의 취득과 무상주 수령에 대한 세무조정은 2014년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한 주식의 2018년 기초 장부가액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63,400,000이다.

| 취득일 | 주식수 | 취득내역 | 1주당 취득가액 | 장부가액 |
|---|---|---|---|---|
| 2014. 4.20. | 4,000 | 유상 취득 | ₩7,500 | ₩30,000,000 |
| 2014. 8.20. | 4,000 | 유상 취득 | 8,350 | 33,400,000 |
| 2014.10.20. | 1,000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수령 | - | - |
| 2014.12.10. | 1,000 |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수령 | - | - |
| 계 | 10,000 | - | | ₩63,400,000 |

2. (주)대한은 2018.4.1.에 1주당 ₩2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20%(40,000주)를 감자하였다. (주)대한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차) | 자 본 금 | 200,000,000 | 대) | 현 금 | 800,000,000 |
| | 감자차손 | 600,000,000 | | | |

3. (주)한국은 2018.4.1.에 (주)대한으로부터 감자대가를 수령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차) | 현 금 | 40,000,000 | 대) | 유가증권 | 12,680,000 |
| | | | | 유가증권처분이익 | 27,320,000 |

물음 1) <자료1>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4점)

(1) (주)한국의 ① 의제배당금액(감자대가, 소멸하는 주식가액을 표시)을 제시하고, ② 감자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한국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료 2>

1. (주)한국은 2017.10.10.에 (주)민국(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15,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의 (주)민국에 대한 지분율은 20%이며, 주식의 장부가액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2018년 기초 재무상태표에 ₩30,000,000으로 계상하고 있다.

2. (주)민국은 2018.4.1. 현재 자기주식을 2,000주 보유하고 있다. (주)민국은 2018.4.1.에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10,000주의 무상주를 배부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주주에게 8,000주를 배정하고 자기주식 배정 분을 기존주주에게 추가 배정하지 않았다. 당초 무상주 10,000주의 배정재원과 8,000주 배정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1) 배정재원

| 잉여금 구분 | 금 액 | 비 고 |
|---|---|---|
| 주식발행초과금 | ₩15,000,000 | 주식의 액면초과 발행금액임 |
| 자기주식소각이익 | 15,000,000 | 주식소각일은 2016.7.10.임 |
| 자기주식처분이익 | 10,000,000 | 자기주식 처분일은 2017.9.10.임 |
| 이익준비금 | 10,000,000 | |
| 계 | ₩50,000,000 | |

(2) 배정에 따른 회계처리

| | | | | |
|---|---|---|---|---|
| 차) | 주식발행초과금 | 12,000,000 | 대) 자 본 금 | 40,000,000 |
| | 자기주식소각이익 | 12,000,000 | |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8,000,000 | | |
| | 이익준비금 | 8,000,000 | | |

3. (주)한국은 무상주 2,000주를 수령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물음 2) <자료2>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6점)

(1) (주)한국의 ① 의제배당금액을 제시하고, ② 무상주 수령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한국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료 3>

1. (주)한국은 2018.1.1. 현재 (주)서울(발행주식 총수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의 주식 4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59,000,000이다.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서울 주식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8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주)서울의 주식 수는 변동이 없었다.

| 취득일 | 주식수 | 취득단가 (처분단가) | 지분율 | 장부가액 | 비고 |
|---|---|---|---|---|---|
| 2017.4.11. | 5,500 | ₩5,500 | 27.5% | ₩30,250,000 | 1주당 시가가 ₩6,000이나 (주)한국의 대표이사인 김국한으로부터 1주당 ₩5,500에 취득하였다. |
| 2017.10.26. | 4,500 | 7,000 | 22.5% | 31,500,000 | 제3자로부터 1주당 시가인 ₩7,000에 정상적으로 유상 취득한 것이다. |
| 2017.12.18. | △500 | (5,500) | -2.5% | △2,750,000 | 1주당 시가인 ₩7,500에 정상적으로 매각한 것이다.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원가를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였다. |
| 계 | 9,500 | - | 47.5% | ₩59,000,000 | |

2. 앞에서 (주)한국이 무부채기업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한국의 2018년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18,000,000이라고 가정한다. 이자비용 중 ₩1,700,000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이며, 이것을 제외하고 지급이자와 관련된 손금불산입 금액은 없다.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3. (주)서울은 2017.12.3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2018.1.15.에 1주당 ₩500의 현금배당 결의를 하였다. 실제로 배당금은 2018.1.25.에 지급되었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 현 금 10,000,000

4. (주)한국은 2018년 배당금 수령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였다.

물음 3) <자료3>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주)한국이 2017년에 수행한 ① 주식 취득 관련 세무조정과 ② 주식 처분 관련 세무조정을 각각 제시하시오.

(2) (주)한국의 ① 수입배당금 총액을 제시하고,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과 관련된 ②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 금액, ③ 지급이자 차감액을 제시하고 ④ 세무조정을 하시오.

**【문제 3】** 다음 자료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세무조정 물음에 대한 답안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고, 같은 자료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답안양식>

| 물음번호 | 조정유형 | 과 목 | 금 액 | 소득처분 |
|---|---|---|---|---|
| | <익금산입> | 토지 A | ×× | (유보) |
| | … | … | … | … |
| | <손금산입> | 토지 B | ×× | (△유보) |
| | … | … | … | … |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대한(사업연도: 1.1.~12.31.)의 제품과 토지의 판매 등에 관한 자료이다.

1. (주)대한은 제18기 사업연도 2018.8.5.에 제품 A를 ₩20,000,000(원가율 70%)에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8.9.5.(계약금) | 2018.10.5.(중도금) | 2019.10.5.(잔금) |
|---|---|---|
| ₩2,000,000 | ₩8,000,000 | ₩10,000,000 |

(1) (주)대한은 2018.9.5. 계약금 ₩2,000,000을 수령하면서 제품 A를 인도하였으며, 2018.10.5. 중도금 중 ₩7,000,000을 수령하였고, 2019.10.5. 나머지 잔금인 ₩11,000,000을 수령하였다.

(2) (주)대한은 제품 A의 판매에 대해 실제 회수한 대금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였다.

2. (주)대한은 2018.7.1.에 토지(장부가액 ₩80,000,000)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1) 토지의 양도대금은 ₩200,000,000이며 대금의 수령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2018.7.1.(계약금) | 2018.10.1.(중도금) | 2019.9.1.(잔금) |
|---|---|---|
| ₩30,000,000 | ₩70,000,000 | ₩100,000,000 |

(2)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중도금 수령일이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잔금 수령일이다.

(3) (주)대한은 토지 양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면서 모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9.1. 잔금을 수령하면서 토지처분이익 ₩120,000,000을 계상하였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대한의 제품 A 판매에 대한 제18기 사업연도와 제19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대한의 토지 양도에 대한 제18기 사업연도와 제19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료 2> 다음은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인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의 접대비 등에 관한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액 ₩10,000,000,000(제품매출액 ₩9,800,000,000, 본사건물의 임대료수입 ₩200,000,000)이며, 제품매출액 중 ₩1,000,000,000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② 영업외 수익 ₩700,000,000(기계장치의 임대료수입 ₩500,000,000, 부산물매각대 ₩200,000,000)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총액은 ₩50,000,000이며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임직원의 단합을 위하여 지출한 회식비 ₩2,000,000
② 거래처 임원 자녀의 결혼축의금 지급액 ₩500,000(1회,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③ 임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처 접대액 ₩3,000,000(거래건당 1만원 초과분)
④ 거래처에게 접대용으로 제공한 생산제품의 시가 ₩1,000,000(적격증명서류 미수취)

3. 접대비 이외의 비용 계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종업원이 구성한 노동조합으로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운영비 ₩5,000,000
② 약정에 따라 포기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10,000,000
③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불공제매입세액 ₩400,000
④ 생산한 제품으로 거래처에게 제공한 접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000
⑤ 사전 약정없이 특정거래처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1,200,000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7점)

(1)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대한이 중소기업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령으로 정한 접대비한도액 축소대상 특정내국법인인 경우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시오. (단,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시 접대비해당액은 ₩50,000,000(문화접대비 ₩1,000,000 포함)이고 수입금액은 ₩5,000,000,000으로 한다.)

<자료 3> 다음은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의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에 관한 자료이다.

1. (주)대한은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고 완공 후 10년간 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주)대한이 2018.7.1. 건물의 완공시점까지 투입한 건설자금의 장부가액은 ₩200,000,000이며, 완공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20,000,000이다.

3. (주)대한은 동 건물을 2018.7.1. 완공시점에 서울특별시에 기부하였으며, 건물의 시가인 ₩300,000,000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1) 건물 완공 회계처리

| | | | | | |
|---|---|---|---|---|---|
| 차) | 건 물 | 220,000,000 | 대) | 건설중인자산 | 200,000,000 |
| | | | | 현 금 | 20,000,000 |

(2) 사용수익기부자산 회계처리

| | | | | | |
|---|---|---|---|---|---|
| 차) | 사용수익기부자산 | 300,000,000 | 대) | 건 물 | 220,000,000 |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80,000,000 |

4. (주)대한은 제18기 사업연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비로 ₩30,000,000을 계상하였다.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7점)

(1)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대한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2018.10.31. 건물피난시설에 대한 설치비 ₩10,000,000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부인액을 계산하시오. (단,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부인액 계산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은 ₩200,000,000이고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20,000,000으로 한다.)

<자료 4> 다음은 (주)서울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의 특수관계인인 (주)부산의 흡수합병 등에 관한 자료이다.

1. (주)서울과 (주)부산은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합병 직전 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와 1주당 평가액 및 액면가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서울 | (주)부산 |
|---|---|---|
| 발행주식 총수 | 30,000주 | 20,000주 |
| 1주당 평가액 | ₩50,000 | ₩10,000 |
| 액면가액 | ₩5,000 | ₩5,000 |

2. (주)서울과 (주)부산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주 | 지분율 |
|---|---|---|
| (주)서울 | (주)대한 | 75% |
| | (주)민국 | 15% |
| | 거주자 A | 10% |
| (주)부산 | (주)화성 | 40% |
| | (주)금성 | 55% |
| | 거주자 B | 5% |

3. (주)대한과 (주)화성은 특수관계인이고, (주)민국과 거주자 B는 특수관계인이며, 그 밖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없다.

4. (주)서울은 (주)부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주)부산의 주식 2주당 (주)서울의 주식 1주를 (주)부산의 주주에게 교부하였으며,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물음 4) <자료 4>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서울의 제18기 사업연도에 (주)부산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① (주)대한의 세무조정과 ② (주)민국의 세무조정을 각각 하시오.

(2) (주)서울의 제18기 사업연도에 (주)부산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주)화성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문제 4】** 다음의 각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중소기업 아님)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18.10.1.~2018.12.31.)의 거래내역이다.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제품 ₩50,000,000을 2018.10.15.에 외상판매하였다. 거래상대방은 대금할인기간 이내인 2018.10.25.에 외상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매출할인 ₩1,500,000이 발생하였다. (주)대한은 동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1,000,000을 2018.11.1.에 별도로 지급하였다.

2. 수탁회사인 (주)부산에 위탁판매를 위하여 제품 ₩140,000,000(장부가액)을 적송하였다. 수탁회사는 2018.12.31.에 동 제품 중 절반을 ₩80,000,000에 현금 판매하였고, 2019.1.3.에 나머지를 ₩80,0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3. 2018.12.30.에 할부조건으로 ₩40,000,000(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38,000,000임)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였다. 할부대금은 인도일에 ₩10,000,000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3회로 분할하여 매 6개월마다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주)서울의 특별주문에 따라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하여 잔금회수약정일에 인도하기로 하고 2018.11.25.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내용에 의한 대금회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2018.12.31. 현재 제품A와 제품B의 완성도는 각각 20%와 30%이다.

| 구분 | 제품A | | 제품B | |
|---|---|---|---|---|
| | 금액 | 회수 약정일 | 금액 | 회수 약정일 |
| 계약금 | ₩20,000,000 | 2018.11.25. | ₩15,000,000 | 2018.11.25. |
| 중도금 | - | - | 15,000,000 | 2019.3.25. |
| 잔금 | 20,000,000 | 2019.7.25. | 15,000,000 | 2019.6.25. |
| 대금 계 | ₩40,000,000 | - | ₩45,000,000 | - |

5. 제품을 타계정으로 대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계정과목 | 내용 | 원가 | 시가 |
|---|---|---|---|
| 복리후생비 | 장기근속 종업원 포상 | ₩3,000,000 | ₩4,000,000 |
| 기부금 | 국가에 제품 무상 제공 | 6,000,000 | 8,000,000 |

6. 2018.10.1.에 기계장치A를 제품생산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기계장치A는 2017.7.10. ₩9,000,000에 취득과 동시에 사용하여 왔으며, 무상이전시 장부가액과 시가는 각각 ₩7,000,000과 ₩5,000,000이다.

7. 2018.10.2.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주)민국과 체결하였다. 총 계약금액은 ₩200,000,000이며, 공사대금은 아래의 완성도 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8.12.31. 현재 공사진행률은 40%이다.

| 공사진행률 | 0%(계약시) | 50% 도달시 | 70% 도달시 | 100% 도달시 |
|---|---|---|---|---|
| 대금회수 약정내용 | 10% 지급 | 30% 지급 | 30% 지급 | 30% 지급 |

8. 기계장치B와 건물(토지 제외)을 (주)광장에게 다음과 같은 대금회수조건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2018.10.1.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 의하면 기계장치B는 잔금수령일에 인도하는 조건이며, 매수인의 건물 이용가능일은 2018.12.15.이다.

| 구분 | 기계장치B | | 건물 | |
|---|---|---|---|---|
| | 대금회수 약정일 | 금액 | 대금회수 약정일 | 금액 |
| 계약금 | 2018.10.1. | ₩2,000,000 | 2018.10.1. | ₩100,000,000 |
| 중도금 | 2018.12.1. | 4,000,000 | 2018.12.1. | 200,000,000 |
| 잔금 | 2019.2.1. | 4,000,000 | 2019.2.1. | 200,000,000 |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18.10.1.~2018.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답안 양식>

| 자료번호 | 과세표준 |
|---|---|
| 1 | |
| ·<br>· | |
| 8 | |
| 합계 | |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2018년 과세기간의 자료이다.(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1. 공급가액

| 구분 | 2018년 제1기 | 2018년 제2기 | | |
|---|---|---|---|---|
| | | 7.1.~9.30. | 10.1.~12.31. | 계 |
| 과일판매사업 | ₩90,000,000 | ₩62,500,000 | ₩83,300,000 | ₩145,800,000 |
| 과일통조림사업 | 247,500,000 | 132,812,500 | 207,387,500 | 340,200,000 |
| 부동산임대사업 | 112,500,000 | 54,687,500 | 59,312,500 | 114,000,000 |
| 계 | ₩450,000,000 | ₩250,000,000 | ₩350,000,000 | ₩600,000,000 |

2. 세금계산서수취분 매입세액

| 구분 | 2018.7.1.~2018.9.30. | 2018.10.1.~2018.12.31. |
|---|---|---|
| 과일판매사업 | ₩4,000,000 | ₩4,500,000 |
| 과일통조림사업 | 10,000,000 | 14,000,000 |
| 부동산임대사업 | 1,000,000 | 1,500,000 |
| 공통매입세액*1) | 5,000,000 | 4,000,000 |
| 합계 | ₩20,000,000 | ₩24,000,000 |

*1) 공통매입세액은 과일판매사업, 과일통조림사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3.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18.10.1.~2018.12.31.)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① 과일판매사업과 과일통조림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500,000
   ② 과일판매사업, 과일통조림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품의 매입세액 ₩1,000,000

4. 트럭을 2017.4.10.에 구입(취득시 매입세액 ₩3,000,000)하여 과일판매사업에서 사용해오던 중, 2018.11.25.부터 과일통조림사업에도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5.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일판매사업과 과일통조림사업에 사용될 과일의 매입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주)한국은 과일의 매입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재고는 없다.

| 구 분 | 적 요 | 2018.7.1.~2018.9.30. | 2018.10.1.~2018.12.31. |
|---|---|---|---|
| 입 고 | 기간 초일 과일재고액 | ₩0 | ₩7,000,000 |
| | 과일매입 | 80,640,000 | 111,260,000 |
| 출 고 | 과일판매로 사용 | 32,500,000 | 41,800,000 |
| | 과일통조림 원료로 사용 | 41,140,000 | 66,960,000 |
| | 기간 말일 과일재고액*1) | 7,000,000 | 9,500,000 |

*1)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6. 2018년 제2기 예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18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8점)

<답안 양식>

| 구분 | 세액 |
|---|---|
| (1) 세금계산서수취분 매입세액 | |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
| (3) 의제매입세액 | |
| (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
|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6)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 |
| (7) 차가감 계 {(1)+(2)+(3)+(4)-(5)-(6)} | |

<자료 3>

다음은 숙박업(부가가치율 20%)과 소매업(부가가치율 10%)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김공단씨의 2018년 과세기간(2018.1.1.~2018.12.31.)의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1. 과세기간 중 사업별 공급대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공급대가 | 비고 |
|---|---|---|
| 숙박업 | ₩20,000,0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8,000,000 포함 |
| 소매업 | 30,000,0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12,000,000 포함 |
| 합계 | ₩50,000,000 | |

2. 숙박업과 소매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4,000,000(공급대가)에 매각하였다.

3. 과세기간 중 매입세액의 내용
   ①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은 숙박업 귀속분이 ₩1,000,000이고 소매업 귀속분이 ₩1,600,000이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은 ₩1,000,000이며, 이는 숙박업과 소매업에 공통사용되는 비품의 매입세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4.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부세액은 ₩220,000이다.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김공단씨의 2018년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답안 양식>

| 구분 | | 세액 |
|---|---|---|
| 납부세액 | | |
| 공제세액 | ·<br>·<br>계 | |
| 예정고지세액 |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세액) | | |